

2024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수시모집 공고

[장수지역 / JS1단계 지원 희망기업 한정]

도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“2024년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”를 통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도입 및 현장 혁신활동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01일
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I. 사업개요

- 도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- 협약 후 사업 포기 기업 발생에 따른 장수 지역의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JS1단계 참여기업 추가모집

< 2024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 현황 >

지원유형	지원대상	지원내용	총사업비 (지원금)	사업기간 (최대)	선정규모
JS1 (기초1)	ICT미적용 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○ 현장 혁신활동을 통한 설비관리, 환경안전, 품질, 생산성 향상 지원 및 간편자동화장비 도입으로 현장혁신 지원	0.5억원 (0.4억원)	6개월	1개사

* JS1의 경우 매출액 50억원 미만 또는 고용 20명 미만 기업 중심으로 지원

* 사업기간은 변경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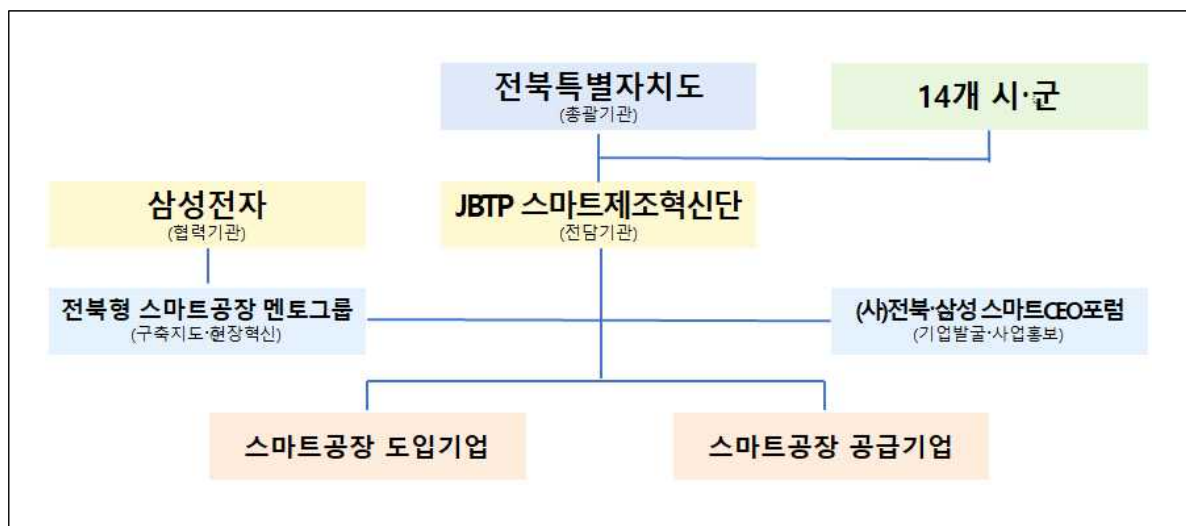
* JS1 추가 신청기업 기업이 없는경우 기존 신청기업 중 사업비 조정 후 지원 예정

II. 사업 지원계획

○ 사업개요

- ▶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대기업 출신 제조혁신 전문가 30명의 현장 혁신활동(6~10주 기업 상주)을 지원

○ 추진체계



○ 지원내용

- ▶ IoT, 5G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
 - ※ 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
- ▶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
- ▶ 제조혁신 교육(3정5S), 간편 자동화 기구물 제작, 공장 Layout 최적화, 물류 및 창고관리 노하우 전수 등 현장 혁신활동 지원

○ 지원조건

지원유형	지원조건	지원금 (총사업비 80%)	사업기간
JS1	- 기초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- 간편자동화를 통한 현장혁신	최대 0.4억	최대 6개월

○ 신청자격

구분	지원유형	지원조건
도입 기업	JS1	- 전북도내 중소·중견기업 - 스마트공장 既 구축기업은 지원/신청 불가능 (매출액 50억 미만 또는 고용 20명 미만 기업 중심)
공급 기업	자사가 개발한 운영시스템을 보유한 기업 (타사의 운영시스템을 커스텀 없이 재판매 하는 공급기업은 참여 불가능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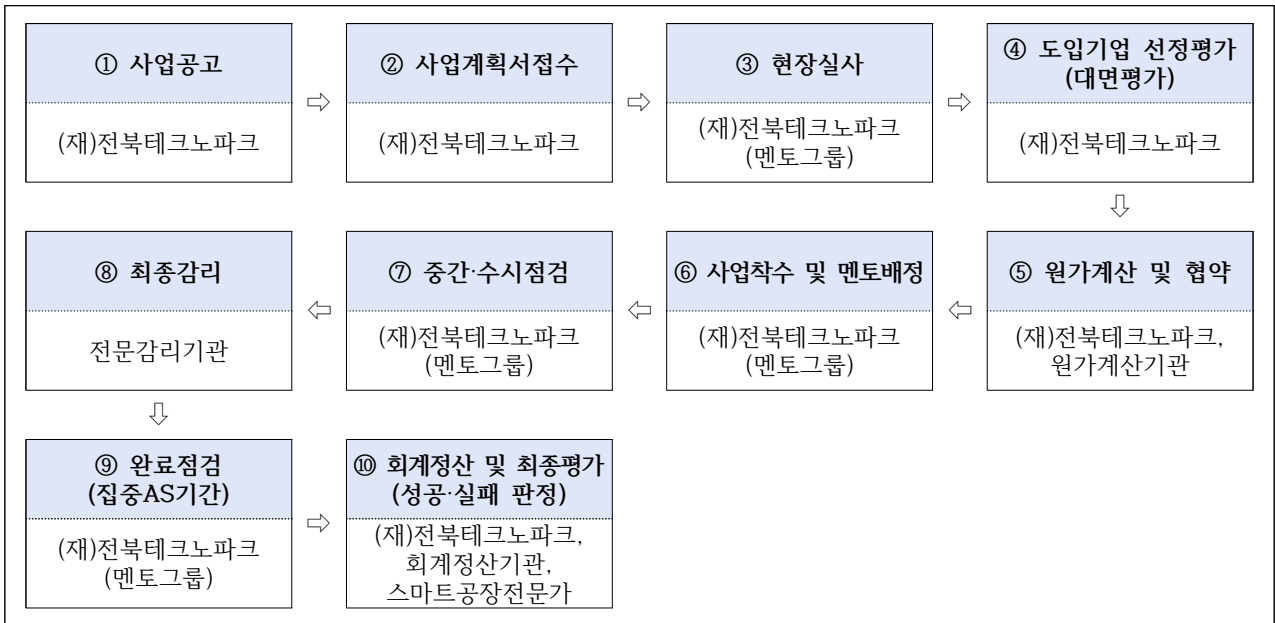
○ 신청기간 및 방법

- ▶ (신청기간) 2024년 11월 1일(금) ~ 모집완료시 까지 신청·접수
- ▶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- ▶ 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• 사업계획서
2	•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3	•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
4	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5	• 도입기업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

※ 관련 양식은 “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운영매뉴얼” 참조

○ 지원절차



○ 선정절차 및 방법

구분	개요	평가기준
①현장실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도입기업의 현장 연계성 확인 현장 혁신활동 비용 산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여부 확인
②선정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 기반의 대면(발표)평가를 통해 지원 적합성을 평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성평가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

※ 현장실사에서 사업계획서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함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 될 수 있음

※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중 현장 혁신활동을 진행해야 하며, **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비 내에 "혁신활동 재료비" 최소 1,000만원 이상 산정 필수**

○ 선정방법

① 현장실사

확인 항목		확인여부
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	•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(휴·폐업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
	•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, 설비 등 일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
	•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(정상가동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

② 선정평가

평가 항목		배점
도입기업 역량	• 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 경우), 영업이익,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?	10
	•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• 도입기업의 자부담 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	10
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	• 스마트공장 구축 “주요 내용”의 범위가 명확하고, “목표수준”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	10
	• 수행하고자 하는 “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”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호라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“목표수준” 달성에 적합한가?	10
	•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↔구축내용↔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 등의 적절성)	10
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	• “데이터집계 포인트”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• “솔루션 기능 구성도”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	10
	• “추진조직 및 업무분장”과 “지원계획”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정한가?	10
	• “추진일정 총괄표”와 “산출물 예정 목록” 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“산출물 예정 목록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	5
	•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	5
합 계		100

※ 동점자 처리기준 : ① 가점제외한 점수가 높은 기업, ② 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

○ 기타사항

- 선정된 도입기업은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실무자 교육 의무 수료
- 운영매뉴얼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
* 운영매뉴얼은 사업 공고문과 함께 공지되며, 사업 중간에 개정 된 경우 도입·공급기업에 별도 안내
-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(Pool)에 등록하여야 하며, 자동화·센서·로봇 등 비솔루션(H/W)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
- 협약 전 포기, 협약 후 포기 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을 선정 할 수 있음

○ 지원제외대상

- 과제 신청일 기준 ‘타 기관의 스마트공장 사업’을 구축 중인 기업
* 단, 구축기간 완료 후 집중AS기간 수행 중인 기업은 신청 가능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< 부적격 사항 >

· 휴·폐업중인 기업	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	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·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‘참여제한’ 중인 기업	
· 장비 도입이 주 목적인 기업	

○ 가점내용 : 항목 당 3점, 최대 5점까지 인정

<우대사항 가점항목>

가점항목	평가기준 및 제출서류
뿌리기업	·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(주조, 금형, 용접, 소성가공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금속소재 관련 14개 산업)을 영위하는 기업 *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 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발급)
여성기업	·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* ‘여성기업 확인서’ 제출 필요
장애인기업	· 「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」 제2조 등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* ‘장애인기업 확인서’ 제출 필요 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
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기업	·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체계에 선정된 기업으로 돌움기업, 도약기업, 선도기업, 스타기업, 글로벌 강소기업 등
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	·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일터의 질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일터혁신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기업
지역특화프로젝트 참여기업	·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
도내 공급기업	· 도내에 본사 또는 사무소를 보유한 공급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

III. 수준정의

- 스마트공장은 기업별 다양한 형태로 구현 가능하며, 기업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
 - ※ 공장의 ICT기술 활용정도와 역량에 따라 ICT 미적용 - 기초1 - 기초2 - 중간1 - 중간2 - 고도화로 구분 가능

< 전북형 스마트공장 수준별 정의 >

유형	수준	운영시스템	자동화
JS1	기초1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분별 표준화 및 실적정보 관리 -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단계 · 운영시스템 중 일부 모듈 운영 또는 현장개선(LCIA활용 등)	

IV. 문의 및 연락처

- 담당기관 연락처

구분	기관명	연락처
공고내용 관련문의	(재)전북테크노파크 (스마트제조혁신팀)	063-219-2276~77